운영위원수당 지급세칙

제 정 2011. 3. 29 개 정(1) 2014. 5. 23

- 제1조(목적) 이 세칙은 운영위원회 규정 제17조에 의한 운영위원의 수당 및 그 지급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수당의 지급 대상) 법 제9조의 운영위원회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활동한 운영위원에 대하여 공사의 예산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 다만 법 제10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.
- 제3조(수당의 지급 방법) ①연간 일정 주기를 정하여 정기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월정액을 정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 월정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및 소위원회 등 기타의 회의 참여에 대한 참석수당은 별도로 지급하지 아니하다.
 - ②수당의 지급금액은 사장이 정한다.
- 제4조(수당의 지급 금액) ①월정액 지급 시 수당의 지급금액은 별표 1과 같다.
 - ②월정 수당은 매월 21일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지급일이 공휴일 또는 금융기관 휴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.
 - ③운영위원이 임기 중 해임되거나 임기만료 또는 사망 그 밖의 사유로 중도에 퇴임하는 경우에 해임 또는 퇴임한 날이 속하는 월의 수당은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다.
 - ④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이 해외거주자인 경우에는 항공료와 체재비는 여비세칙에 따라 사장에 준하여 지급한다.

부 칙(제정)

제1조(시행일) 이 세칙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세칙의 시행일 이전에 지급한 수당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것으로 본다.

부 칙(1)

제1조(시행일) 이 세칙은 2014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
(별표 1)

수 당(월)

(단위: 천원)

구 분	금 액
운영위원	2,500